

2021 제1호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맞춤형 법제정보

- 프랑스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영국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독일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외국법제동향

- 독일 민법상 중개수수료 규정 관련 최신 동향
- 중국 수출규제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 캐나다 아동학대 방지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프랑스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체계 및 주요 내용

2021 제1호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캐나다 아동학대 방지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김나루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 법학박사

## I. 들어가며

캐나다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책무를 10개의 주(province)<sup>1</sup>와 3개의 준주(territory)<sup>2</sup>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sup>3</sup>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아동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정책 결정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 차원의 개입과 아동복지 서비스의 이행은 각 주 및 준주의 법제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 및 준주의 아동보호법은 공통의 입법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특징들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각 주 및 준주의 아동보호법은 아동의 안전 및 복지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개념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물론이고 방치를 포함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은 아동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적용되며, 대부분의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는 입증할 수 있는 피해가 아동에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개입도 최소한의 관여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 및 준주에서 다루는 아동학대를 조사하기 위한 연령 범위는 다양하며, 각 주(준주)마다 16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의 자로 각각 기준이 나누어져 있다.<sup>4</sup>

\* 본고는 법무부의 입장이 아닌 필자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1 앨버타(Alberta),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매니토바(Manitoba),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노바스코샤(Nova Scotia), 온타리오(Ontario),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퀘벡(Quebec), 서스캐처원(Saskatchewan)

2 노스웨스트(Northwest), 누나부트(Nunavut), 유콘(Youcon)

3 캐나다 원주민 집단은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 이누이트(Inuit), 메티스(Métis)로 나뉘며, 2011년도 기준으로 퍼스트 네이션스 인구는 851,560명으로 집계되며, 전체 원주민의 60.8%, 전체 캐나다인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퍼스트 네이션스 원주민은 온타리오주 및 서부 주에 살았지만,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주, 매니토바주, 서스캐처원주의 총인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https://www12.statcan.gc.ca/nhs-enm/2011/as-sa/99-011-x/99-011-x2011001-eng.cfm>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4 Nico Trocmé et al., Child Welfare Services in Canada, in Lisa Merkel-Holguin et al., National Systems of Child Protection, Springer, 2019, pp. 37~39.

본고에서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있는 캐나다의 아동학대 방지 법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방 및 주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의 주요 내용

### 1. 연방차원

캐나다는 1990년 5월 28일에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서명을 하고, 1991년 12월 13일에 비준하였다. 캐나다 헌법(The Constitution Act, 1982)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의 권리와 이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sup>5</sup> 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아동보호 절차는 부모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근거한 아동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개입은 그것이 근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것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의 개입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의 아동보호법과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국가가 한 가정 내의 아동보호 문제에 개입하는 시점은 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수준이 최저 기준 이하일 때이다. 물론,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등의 국가 개입을 위한 근거가 되는 아동보호법 및 관행은 「UN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모들은 아동 대신 집에서 퇴거해야 할 수도 있다. 2015년 매니토바 원주민 지역의회(Band Council)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이는 아동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다른 보호자의 감독 하에, 부모가 기존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캐나다 국내의 아동보호법과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부모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 전역의 아동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는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서 ‘일차적 고려사항’이 될 것을 요구하는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sup>6</sup>에 따른 것이다.<sup>7</sup>

5 The Constitution Act, 1982 7(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https://www.canlii.org/en/ca/laws/stat/schedule-b-to-the-canada-act-1982-uk-1982-c-11/latest/schedule-b-to-the-canada-act-1982-uk-1982-c-11.html>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6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 <https://www.cba.org/Publications-Resources/Practice-Tools/Child-Rights-Toolkit/legalAreas/Child-Protection>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캐나다의 연방 형법(Criminal Code, 1985)도 아동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폭행, 살인, 약취·유인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형사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생필품 미제공, 아동유기, 아동에 대한 특정 성범죄 등 아동에 대한 특정 범죄도 다수 포함된다. 형법은 아동복지법과는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상해, 성적 학대, 심각한 방치, 가정폭력 노출과 연관된 신체적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기관과 경찰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아동보호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 2. 주(준주) 차원

### (1) 아동복지 시스템의 구조

캐나다에서 ‘아동복지(child welfare)’는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정부 및 민간 서비스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아동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아동복지기관은 일반적으로 학대 및 방치의 상황을 조사하고, 위탁양육을 감독하고 입양을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sup>8</sup>

캐나다의 주 및 준주에는 일반인이 24시간 동안 연락할 수 있는 아동복지기관이 있다. 이러한 기관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위험에 처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아동복지기관은 캐나다 아동복지 시스템(Candian child welfare system)의 핵심이다. 이러한 주 및 준주 차원의 아동복지 시스템은 가정의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나 방치가 의심된다는 신고로 작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아동학대 및 방치 가능성에 대한 신고 및 조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 제공 및 그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이 가정 내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친족·위탁가정 또는 허가받은 그룹홈 시설에 아동 배정, 아동을 위한 영구 입양가정 연결, 위탁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이다.

물론 각 주 및 준주는 헌법에 근거하여, 학대 또는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아동보호 법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보호에 대한 접근방식은 조금씩 다르다.<sup>9</sup> 그러나 각 주 및 준주의 아동보호법<sup>10</sup>은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및 유기에 대한

8 <https://cwpr.ca/frequently-asked-questions-faq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9 Nicholas Bala, Kate Keho, Concurrent Legal Proceedings in Cases of Family Violence: The Child Protection Perspective, 2017, pp. 5-6.

10 앨버타(Alberta)주는 ‘아동·청소년·가족 강화법(The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는 ‘아동·가족·지역사회 서비스법(The 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ct)’, 매니토바(Manitoba)주는 ‘아동·가족 서비스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는 ‘가족서비스

신고 의무가 있으며, 아동보호 서비스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기본 틀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위험 평가에 관한 내용이 있다. 또한 아동보호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있다.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친족 돌봄, 위탁가정, 그룹홈, 거주 가능한 치료 시설 등 원가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마련에 대한 내용이 있다.<sup>11</sup>

그런데 각 주 및 준주의 아동복지 서비스의 구조와 조직, 아동학대 조사 절차와 개입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주에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권한이 위임된 48개의 지역사회 운영의 아동복지기관<sup>12</sup>이 담당하며, 이러한 기관은 핵심적인 조사 기능부터 지속적인 감독, 상담 및 원가정 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주 및 준주에서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수준의 지역 독립성을 가진 정부기관을 통해서 제공된다.<sup>13</sup>

## (2) '아동학대'의 의미

각 주 및 준주에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이 있다. 이러한 법은 '보호의 연령(age of protection)'이라고 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연령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아동보호의 연령은 각 주 및 준주의 아동보호 관련법에 근거하여, 그 연령대가 다르므로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노스웨스트(Northwest), 누나부트(Nunavut), 서스캐처원(Saskatchewan)은 16세 미만, 앨버타(Alberta), 매니토바(Manitoba), 온타리오(Ontario),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퀘벡(Quebec)은 18세 미만,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노바스코샤(Nova Scotia), 유콘(Youcon)은 19세 미만이다.<sup>14</sup>

법(The Family Services Act),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주는 '아동·청소년 돌봄 및 보호법(The Children and Youth Care and Protection Act)', 노스웨스트(Northwest)준주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는 '아동·가족 서비스법(The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Act)', 누나부트(Nunavut)준주는 '아동·가족 서비스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온타리오(Ontario)주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법(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주는 '아동보호법(The Child Protection Act)', 퀘벡(Quebec)주는 '청소년보호법(The Youth Protection Act)',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는 '아동·가족 서비스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유콘(Youcon)준주는 '아동·가족 서비스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을 두고 있다.

11 Nico Trocmé et al., Child Welfare Services in Canada, in Lisa Merkel-Holguin et al., National Systems of Child Protection, p. 27.

12 온타리오주의 아동복지 기관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로부터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이며, 주정부의 규제와 재정 지원을 받지만,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이 있다. 특히 역사적인 이유로, 온타리오주의 몇몇 대도시에 가톨릭과 유대교 가정을 위한 아동복지기관이 있다(Nicholas Bala, Kate Keho, Concurrent Legal Proceedings in Cases of Family Violence: The Child Protection Perspective, p. 6;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2015, p. 16.)

13 Nico Trocmé et al., Child Welfare Services in Canada, in Lisa Merkel-Holguin et al., National Systems of Child Protection, p. 37.

14 <https://cwrp.ca/frequently-asked-questions-faq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학대’는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방치(neglect)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를 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그 예로는 발차기, 때리기, 흔들기, 위협 등이 있다. 성적 학대는 성인, 청소년 또는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이 나이가 어린 아동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성적 학대의 예로는 어떤 사람이 아동의 내밀한 부분을 만지거나, 아동이 다른 사람의 내밀한 부분을 만지게 하거나 쳐다보게 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아동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 아동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정서적인 해를 입히기 위해 하는 행위로서, 그들을 괴롭히고, 겁주고, 내쫓는 등의 행동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장난감 또는 다른 소지품을 파괴하거나 그들의 반려동물을 해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해칠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방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방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을 책임지는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동에게 음식과 옷과 같이 그들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을 때에 발생한다.<sup>15</sup>

### (3) 아동학대 신고의무

퀘벡주를 제외한 각 주 및 준주에서는 아동에게 보호 또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게 하는 정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신고의무가 있으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가진 변호사는 신고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온타리오주와 노바스코샤주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정보를 변호사, 의사 및 치료사와 같이 업무상 비밀유지 관계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도 이들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매니토바주, 서스캐처원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에서는 그 정보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 또는 정부 권한(Crown privilege)으로 접근하여 취득한 정보를 가진 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퀘벡주에서는 일반 개인이 학대나 방치의 모든 사례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특정 직종의 사람은 신고의무가 있다. 직업의 성격상, 아동에게 돌봄이나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의 안전이나 발육에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모든 관련 전문직 종사자는 해당 상황을 아동 및 청소년 보호센터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 기관의 직원, 교사,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경찰관도 직무수행상 아동의 안전이나 발육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변호사, 공증인을 제외하고는 직업상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sup>16</sup>

15 <https://www.justice.gc.ca/eng/cj-jp/fv-vf/ca-me.html>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16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p. 18;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rovincial and Territorial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and Policy 2018, 2019, p. 30.

앞서 언급한 것처럼, 퀘벡주를 제외한 각 주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발생이 의심된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를 했더라도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매년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는 지역 아동복지센터, 주 및 준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부처(부서), 지역 경찰관 등에 하도록 되어 있다.<sup>17</sup> 예를 들면, 온타리오주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법」(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은 아동과 관련하여 업무상 또는 공무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아동학대의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8</sup> 또한 사람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 및 근거를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민사소송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sup>19</sup>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은 합리적인 학대 의혹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관련 직종의 예로는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약사, 심리학자와 같은 의료 전문가, 교사 및 학교장, 사회복지사 및 가족상담사, 성직자, 랍비 및 기타 성직자 구성원, 주간 보육원 운영자 또는 직원,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종사자, 경찰관 및 검사관 등을 들 수 있다.<sup>20</sup> 온타리오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또는 의혹에 대한 신고는 아동보호단체(Children's Aid Society, CAS)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아동학대 또는 방치 혐의를 조사하고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 실제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sup>21</sup>

온타리오주와 같이,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한 유사한 법률이 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이 합리적인 학대 의혹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뉴펀들랜드주의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복지 담당자들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는 않는다. 만일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동복지 담당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는 아동의 안전이 확보

17 <https://cwrp.ca/frequently-asked-questions-faq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18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 Section 125(1)

19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의심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childrensaid/reportingabuse/abuseandneglect.aspx>

20 <https://www.legalline.ca/legal-answers/who-has-a-legal-obligation-to-report-child-abuse/>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21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childrensaid/reportingabuse/abuseandneglect.aspx>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22 <https://www.legalline.ca/legal-answers/who-has-a-legal-obligation-to-report-child-abuse/>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되는 대로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는 아동을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정에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친족 또는 위탁가정을 통한 돌봄이다.<sup>23</sup>

#### (4) 당국의 개입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당국의 개입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그러한 아동이 어떤 아동을 의미하는지는 모든 주 및 준주에서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아동은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 건강 또는 정서적 안녕에 위험이 처하는 경우에 보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앨버타주의 「아동·청소년·가족 강화법」(The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은 방치를 포함하여 아동의 생명, 안전, 발달상태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근거가 있다면, 아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청소년·가족 강화법에서 '개입이 필요한 경우'로, '아동이 유기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체적 상해 및 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성매매·성적 연락, 행동, 활동 등을 포함한 성적 학대에 대한 노출 및 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방치 또는 애정 결핍의 패턴을 통한 정서적 피해, 보호자가 죽고 아동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상태 및 처우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없거나 일부러 그러한 상태에 두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아동·가족·지역사회 서비스법」(The 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ct)은 '아동에게 신체적 피해 및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적 학대·착취 및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모의 행동 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가 있는 경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태 또는 부모가 이를 위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치료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의 부모가 아동에 대한 돌봄을 할 수 없거나 일부러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죽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이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아동·청소년·가족 서비스법」(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 실패 또는 방치로 인한 신체적 피해 및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적 학대·착취 및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정적 피해 및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체적·정서적 피해에 대한 치료 제공 및 동의 거부, 아동의 정신·감정·발달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가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12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관심과 감독의 결여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한 경우 등'이 아동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있다.<sup>24</sup>

23 <https://cwrp.ca/frequently-asked-questions-faq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2일)

24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p. 15;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rovincial and Territorial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and Policy 2018, pp. 18-21.

### (5) 원가정으로부터 아동의 분리

각 주 및 준주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에 대한 조사 의무와 능력이 있으며,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법적 당국이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구호단체(Children’s Aid Society)’로 알려진 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이 기관은 「아동·가족 서비스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의 적용을 받고, 아동청소년서비스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아동보호 당국이다. 앨버타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주정부 기관이 아동보호 당국이며,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앨버타주에서 이 기관은 앨버타주의 인간서비스부(Human Services Ministry) 산하의 ‘아동가족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s)’라는 기관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와 권한을 위임받은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라는 아동복지기관이 아동보호 당국이며, 이들이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퀘벡주에서는 아동의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청소년 인권 위원회(Commiss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et des droits de la jeunesse)’가 아동보호 당국이며, 아동의 안전 또는 발달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를 퀘벡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sup>25</sup>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각 주 및 준주에는 아동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주(준주)법원이 있으며, 이 법원은 제한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법원(local court)이다. 그런데 누나부트 준주는 지방법원이 없어서, 모든 케이스는 고등법원(Superior Court)으로 회부된다.<sup>26</sup>

아동보호 당국은 아동에게 당국의 개입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아동에 대한 보호명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복지 직원은 명장 없이도 아동을 데려올 수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아동복지 직원이 아동보호 청문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근거로 아동에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앨버타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아동복지 직원이 아동보호 명령을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고 즉각적으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아동보호 명령없이 아동을 데려올 수 있다. 아동보호 당국 또는 경찰은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무력을 행사하고 주거용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sup>27</sup>

각 주 및 준주의 아동보호 당국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및 개입방식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퀘벡주 이외의 각 주 및 준주의 아동보호 당국은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 방식을 정하는데, 법원의 명령은 다음과 같다.<sup>28</sup>

25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p. 16.

26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p. 18.

27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p. 16.

28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p. 17.

1) 당국-보호자 합의 (Enhanced Family Agreement: 앨버타주, Plan of Care: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Safety and Service Plans: 온타리오주)

이는 당국이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만나서 아동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합의에 이르도록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최소한의 개입이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정해진 합의사항 또는 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당국의 개입이 강화될 수 있다.

2) 감독 명령 (Supervision Order: 앨버타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온타리오주)

이는 아동의 복지와 관련하여 부모나 다른 사람이 당국의 감독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온타리오주에서 이 명령은 친척, 이웃, 또는 아동 단체의 구성원 또는 대가족의 돌봄 하에 아동을 배치하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3) 임시 후견·보호 명령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앨버타주, Temporary Custody Order: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Society Wardship Order: 온타리오주)

이는 제한된 기간 동안 아동을 당국의 돌봄 하에 두는 법원의 명령이다. 온타리오주에서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기관의 보호가 허가된다. 법원은 아동이 아동후견단체의 보호를 받은 후, 당국의 감독 하에 부모의 돌봄을 받게 하는 명령을 연이어 내릴 수 있다.

4) 영구적 후견 명령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앨버타주, Permanent Custody Order: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Crown Wardship Order: 온타리오주)

이것은 아동이 당국의 영구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앨버타주에서는 적합한 사람에게 영구적인 후견인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당국은 원가정으로부터 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아동은 정부(Crown)의 피후견인이 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아동은 부모나 또 다른 적합한 사람의 돌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법원 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법적 부담은 아동보호 당국에 있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주에서 당국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앨버타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 당국은 법원 명령을 통한 조치 없이는 아동의 생존, 안전, 발달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퀘벡주에서는 관련자가 부모 또는 친권이 부여된 제3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의 이익을 위해 친권의 박탈을 신청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퀘벡 고등법원(Superior

29 퀘벡주에서는 부모가 퀘벡 민법(Civil Code of Quebec) 및 기타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이라는 용어

Court of Quebec)은 친권의 일부 박탈을 선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퀘벡의 주법원은 부모의 특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조정을 지시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 양육권 박탈이 포함되며, 또한 법원은 친권 행사자의 지정이나 교사(tutor)의 임명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듣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설립을 명할 수 있다.<sup>30</sup>

### III. 나가며

캐나다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주 및 준주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데, 주 및 준주에 있는 아동보호 당국 및 기관은 캐나다 아동복지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주 및 준주마다 자체적인 아동보호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 및 시스템 운용 방식이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각 주 및 준주의 아동보호법은 아동의 안전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처벌,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위험평가, 법원의 명령을 통한 개입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유사한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당국의 개입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캐나다와 같이 국가의 개입을 통한 아동보호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나라도 아동의 복리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는 퀘벡 민법에 따라,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들이 그들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로 정의된다. 친권 하의 권리와 의무에는 양육, 돌봄, 감독, 신체적·심리적 보호, 교육 및 아동의 지원이 포함된다. 부모는 '중대한 이유 grave reasons)'로 아동의 이익을 위해 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퀘벡 민법은 "중대한 이유"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퀘벡 판례법은 친권의 박탈은 친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자발적·의도적 유기, 폭력, 아동에 대한 심한 방치의 경우 친권을 박탈할 중대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pp. 15~16)

30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pp. 17~18.

## 참고문헌

- CBA, <https://www.cba.org/Publications-Resources/Practice-Tools/Child-Rights-Toolkit/legalAreas/Child-Protection>
- cwrp.ca, <https://cwrp.ca/frequently-asked-questions-faqs>
-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Enhancing Safety: When Domestic Violence Cases are in Multiple Legal Systems, 2013.
-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https://www.justice.gc.ca/eng/cj-jp/fv-vf/ca-me.html>
- DLA Piper, Child Protection Systems – A Comparative Report Prepared for the NSPCC
- Kineesha William et al., Police Involvement in Child Maltreatment Investigations in Ontario in 2018, Canadian Child Welfare Research Portal, 2020.
- Legalline.ca, <https://www.legalline.ca/legal-answers/who-has-a-legal-obligation-to-report-child-abuse/>
-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childrensaid/reportingabuse/abuseandneglect.aspx>
- Nicholas Bala, Kate Keho, Concurrent Legal Proceedings in Cases of Family Violence: The Child Protection Perspective, 2017.
- Nico Trocmé et al., Child Welfare Services in Canada, in Lisa Merkel-Holguin et al., National Systems of Child Protection, Springer, 2019.
-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rovincial and Territorial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and Policy 2018.
- Statistics Canada, <https://www12.statcan.gc.ca/nhs-enm/2011/as-sa/99-011-x/99-011-x2011001-eng.cfm>
- The Constitution Act, 1982 7(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https://www.canlii.org/en/ca/laws/stat/schedule-b-to-the-canada-act-1982-uk-1982-c-11/latest/schedule-b-to-the-canada-act-1982-uk-1982-c-11.html>

# KLRI

##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http://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http://www.klri.re.kr)

###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http://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